



제433회 국회 (임시회)
제9차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배출권 할당위원회 확대 및 자자체 인원 추가 등 〉

■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98호)

2026. 3.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배출권 할당위원회 확대 및 지자체 인원 추가 등	3
※ 참고자료1: 배출권거래제 운영현황	11
※ 참고자료2: 4기 할당대상업체 중 지자체 현황	12

I. 제안경위

2026년 1월 16일 허종식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조문에서는 참여 대상과 위원회 구성원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배출권 할당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포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

III. 검토의견

1. 배출권 할당위원회 확대 및 지자체 인원 추가 등

개정안은 ① 정부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의견을 들어야 하는 이해관계인을 관계 주민,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체화하는 한편(안 제5조제4항), ②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현행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면서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위원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략)	제5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부는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u>이해관계인</u> 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할당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 ----- --- <u>관계 주민,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 등 이해관계인</u> -----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할당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u>2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u>40명</u> ----- -----.

현행	개정안
② 할당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2. (생략) <신설> ③ ~ ⑦ (생략)	② ----- ----- -----. 1. 2. (현행과 같음) 3. <u>각 광역지방자치단체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u> ③ ~ ⑦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 제5조1)에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하여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이하 “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배출허용총량에 따른 해당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총수량에 관한 사항
 3.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관한 사항
 4. 부문별·업종별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량에 관한 사항
 5.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량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방식에 관한 사항
 7. 제12조제3항 및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에 따른 이행연도별 배출권 유상할당 목표비율에 관한 사항
 - 7의2. 제12조제3항에 따른 배출권의 유상할당 방법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5. 10. 28.>
 9.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수량 및 배분기준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차입 및 제29조에 따른 상쇄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해당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 및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부문별·업종별 배출권거래제의 적용 여건 및 국제경쟁력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계획기간 중에 국내외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 기술 발전 등으로 할당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할당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할당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할당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위하여 계획기간별 배출허용총량과 이에 따른 배출권 총수량 등에 관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이 과정에서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타당한 경우 그 의견을 할당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재 “제4차 계획기간(2026.1.1.~2030.12.31.)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수립·시행중임.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총수량]

(단위: KAU)

구분	수량	비율
배출권 총수량	2,557,295,393	-
배출허용총량	2,537,295,393	100.0%
사전할당량	2,362,977,255	93.1%
발전 부문	795,754,074	31.4%
발전外 부문	1,567,223,181	61.8%
기타용도 예비분	89,040,810	3.5%
발전 부문	46,948,780	1.9%
발전外 부문	42,092,030	1.7%
시장안정화 용도 예비분	85,277,328	3.4%
배출허용총량外 예비분	20,000,000	-
시장 조성 및 유동성 관리 용도 예비분	20,000,000	-

※ 각 예비분 계정의 보유분은 별도의 이행연도 표기 없이 관리하고, 할당대상업체 등의 계정으로 이전 시 제4차 계획기간 중 해당 이행연도를 표기

자료: 제4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행연도별 배출허용총량 및 사전할당량]

- (이행연도별 배출허용총량) 2030 NDC에 ETS 비중을 반영하여 산정된 '30년 배출허용총량을 기준으로 선형으로 감축하도록 설정

◆ 제4차 계획기간 이행연도별 배출허용총량(단위 : KAU) ◆

구 분	'26	'27	'28	'29	'30	합계
합 계	558,482,505	532,970,792	507,459,078	481,947,366	456,435,652	2,537,295,393
발전 부문	201,954,911	186,338,873	170,722,835	155,106,798	139,490,760	853,614,177
발전외 부문	356,527,594	346,631,919	336,736,243	326,840,568	316,944,892	1,683,681,216

- (이행연도별 사전할당량) 기타용도 예비분 및 시장안정화 용도 예비분을 종합 고려하여 선형으로 감축하도록 설정

◆ 제4차 계획기간 이행연도별 사전할당량(단위 : KAU) ◆

구 분	'26	'27	'28	'29	'30	합계
합 계	509,653,851	491,124,651	472,595,451	454,066,251	435,537,051	2,362,977,255
발전 부문	188,592,062	173,871,438	159,150,814	144,430,192	129,709,568	795,754,074
발전외 부문	321,061,789	317,253,213	313,444,637	309,636,059	305,827,483	1,567,223,181

자료: 제4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또한, 이러한 할당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현행 법²⁾은 기획예산처에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배출

-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설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배출권 할당위원회(이하 “할당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할당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3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에 관한 사항
3. 제25조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및 제29조에 따른 상쇄와 관련된 정책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36조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할당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할당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할당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배출권거래제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권 할당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위촉직인 민간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 배출권 할당위원회 현황 >

- (기능) 배출권 할당계획, 시장안정화 조치, 배출량의 인증·상쇄와 관련된 정책조정 및 지원,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및 국제협력 등 주요사항 심의·조정
- (구성) 위원장(기획예산처 장관) 포함 21명 이내 위원
 - (정부: 13명) 기획처장관(위원장), 기재부·과기부·외교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기후부·국토부·해수부 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산림청장
 - (민간: 8명)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배출권거래제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전문가

① 개정안은 할당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이해관계인을 관계 주민,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미 정부는 온라인 공청회 개최 및 의견 접수 등을 통해 일반 시민까지 아우르고 있으므로³⁾,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명확성과 실질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짐.

다만, 할당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특정 지역에 관한 계획을 수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할당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할당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사위원 1명을 둔다.

⑥ 간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할당계획의 수립 준비 등 할당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당시 설명회 2회, 간담회 1회, 공청회 1회를 거쳤으며, 공청회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유튜브 생중계, 국민신문고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및 관심 있는 일반 국민이 참여하여 진행됨.

립하는 것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관계 주민’이 이해관계자가 되는 것은 다소 어색한 측면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외에 민간 기업 등의 이해관계자도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만 명시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는 경우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⁴⁾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정안의 ‘관계 주민’과 ‘전문가’는 할당계획의 배출권 할당 대상이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의 예시로 적합하지 않아 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업 등 다른 할당대상업체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시장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나, 법률에 ‘지방자치단체’만을 이해관계인의 예시로 명시할 시 민간사업자·공공기관 등 다른 할당대상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② 개정안은 배출권 할당위원회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면서, 이로 인해 증가할 인원을 감안하여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위원 수를 20인에서 40인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4) 유사입법례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제3항 등이 있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③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배출권 할당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출권 제도의 중앙정부 중심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장 역시 할당대상업종⁵⁾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권의 유·무상 할당 대상이 될 수 있으며⁶⁾, “제4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르면 58개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장이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어 1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배출권 할당 및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상황임.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배출권 할당 및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지방자치단체 소속 인사를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하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제5조 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로 지정·고시한다.

1.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가. 직전 계획기간 당시 할당대상업체

나.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중에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6)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장을 무상 할당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배출권의 할당)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할당대상에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2.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 ② 법 제12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인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장

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위원회에서 위원과 이해관계 있는 사안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제척, 기피되거나 위원이 회피하는 사례⁷⁾가 일반적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 없이⁸⁾ 배출권 할당 및 거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배출권할당·거래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위원으로 하는 것이 공정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도 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되고 시장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이며, 이해관계인이 배출권 할당과 시장거래 등에 관한 정책의 심의·의사결정에 개입할 경우 공정성·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7) 일례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 본인이나 배우자·친족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여하였던 경우 제척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있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8) 현행법에 배출권 할당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문 의 처
02)6788-5536

참고1

배출권거래제 운영현황

□ (개념) 국가가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배출권)을 설정·할당하고 배출권 여유 및 부족 업체간 거래를 허용

* 1차('15~'17), 2차('18~'20), 3차('21~'25) 계획기간을 거쳐 현재 4차('26~'30) 계획기간 진행 중

□ (대상) 146개 업종, 772개 업체('26.1월)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1.7%

*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2.5만t 이상 업체 또는 2.5만t 이상인 사업장 보유 업체

□ (할당)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연도별 목표를 기준으로 국가의 배출량 중 배출권거래제 비중을 적용하여 배출허용총량 설정

○ 과거 배출량(GF), 배출효율(BM) 등을 기준으로 계획기간 배출권 사전할당, 계획기간 중 신·증설 등은 추가할당*, 폐쇄 등은 할당취소*

* (추가할당) 시설의 신·증설,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 준수(제약발전) 등
(할당취소) 시설의 가동중지·폐쇄, 할당대상업체의 파산 및 지정취소 등

○ 전체 146개 업종 중 112개는 유상할당*, 수출입 비중(무역집약도)이 높고 탄소로 인한 비용부담(탄소집약도)이 큰 34개 업종**은 100% 무상할당

* (발전) '26 15% → '30 50% 단계적 상향, (발전외) 15%

** 철강·비철금속,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제지 등

□ (거래) 증권시장과 유사한 거래 시스템 구축(운영 : 한국거래소)

* (거래량) 566만톤('15) → 52,264만톤('25.10), (거래가격) 10~11천원/톤 수준 유지 중('25.10 기준)

○ 할당대상업체 외에 시장조성자(7개사), 증권사(21개사) 및 금융기관 등 제 3자 참여 허용

□ (정산) 전년도 배출량 확정(5월) 후 이에 상응하는 배출권 제출(6~8월)

* 배출권 미제출 시 시장가격의 3배 수준의 과징금 부과

○ 감축 유연성 확보를 위해 이월, 차입, 상쇄* 등 업계 이행 지원

* 할당대상업체 외부(국내, 해외)에서의 감축실적 인정 → 상쇄배출권으로 활용 가능

참고2

4기 할당대상업체 중 지자체 현황(58개)

□ 지자체 세부현황

순번	지자체명	지정업종	사업장 현황
1	사천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사천시 자원회수센터 등 1개 사업장
2	경기도 광주시	수도사업	광주 정수장 등 26개 사업장
3	전주시	폐기물 처리업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등 26개 사업장
4	세종특별자치시	하수처리업	수질복원센터A 등 39개 사업장
5	용인시	폐기물 처리업	용인환경센터 등 47개 사업장
6	양산시	폐기물 처리업	양산시자원회수시설 등 23개 사업장
7	보령시	폐기물 처리업	보령시 생활폐기물처리장 등 58개 사업장
8	포천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포천시자원회수시설 등 29개 사업장
9	경산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등 27개 사업장
10	강릉시	폐기물	강릉자원순환센터 등 18개 사업장
11	경주시	폐기물 처리업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등 44개 사업장
12	김해시	폐기물 처리업	김해시자원순환시설 등 43개 사업장
13	순천시	폐기물	순천시위생매립장 등 69개 사업장
14	시흥시	폐기물 처리업	시흥 그린센터 등 11개 사업장
15	원주시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원주시 환경사업소(매립시설) 등 48개 사업장
16	의정부시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의정부시자원회수시설 등 7개 사업장
17	진주시	폐기물 처리업	진주시매립장사업소 등 54개 사업장
18	청주시	폐기물 처리업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등 65개 사업장
19	춘천시	폐기물 처리업	춘천시 환경공원 등 29개 사업장
20	화성시	폐기물 처리업	화성그린환경센터 등 53개 사업장
21	군산시	폐기물 처리업	군산시 폐기물매립장 등 31개 사업장
22	양주시	폐기물 처리업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등 21개 사업장
23	충주시	폐기물 처리업	충주하수처리장 등 88개 사업장
24	평택시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평택 에코센터 등 32개 사업장
25	김천시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김천시 환경사업소 등 56개 사업장
26	포항시	폐기물 처리업	포항하수종말처리장 등 34개 사업장
27	하남시	폐기물 처리업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2개 사업장
28	광양시	폐기물	광양시 생활폐기물매립장 등 50개 사업장
29	영주시	폐기물	영주시 쓰레기위생매립장 등 12개 사업장

순번	지자체명	지정업종	사업장 현황
30	부산광역시	폐기물 처리업	해운대사업단 등 31개 사업장
31	대구광역시	폐기물 처리업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부사업소 등 33개 사업장
32	인천광역시	폐기물 처리업	송도사업소 등 36개 사업장
33	광주광역시	폐기물 처리업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등 18개 사업장
34	대전광역시	폐기물 처리업	대전하수처리장 등 12개 사업장
35	울산광역시	폐기물 처리업	울산광역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등 23개 사업장
36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처리업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소각) 등 102개 사업장
37	수원시	폐기물 처리업	수원생태수자원센터 등 10개 사업장
38	성남시	폐기물 처리업	성남환경에너지시설(소각) 등 9개 사업장
39	부천시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부천시자원순환센터 등 4개 사업장
40	창원시	폐기물 처리업	성산자원회수시설 등 34개 사업장
41	광명시	폐기물 처리업	광명시자원회수시설 등 4개 사업장
42	서울특별시	폐기물 처리업	중량물재생센터 등 24개 사업장
43	천안시	폐기물 처리업	천안환경에너지사업소 등 47개 사업장
44	안산시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등 17개 사업장
45	안양시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안양시자원회수시설 등 9개 사업장
46	고양시	폐기물 처리업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 등 8개 사업장
47	구미시	폐기물 처리업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 등 31개 사업장
48	파주시	폐기물 처리업	파주시환경관리센터(소각매립재활용) 등 26개 사업장
49	이천시	폐기물 처리업	이천하수처리장 등 52개 사업장
50	익산시	폐기물 처리업	익산시신재생자원센터 등 42개 사업장
51	아산시	폐기물 처리업	아산시생활자원처리장 등 30개 사업장
52	군포시	폐기물 처리업	군포시환경관리소 등 5개 사업장
53	거제시	폐기물 처리업	거제시자원순환시설 등 50개 사업장
54	통영시	폐기물 처리업	통영시 환경자원화센터 등 40개 사업장
55	김포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김포시자원화센터 등 11개 사업장
56	목포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목포시 위생매립장 등 8개 사업장
57	경상북도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맑은누리파크 등 1개 사업장
58	제천시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등 45개 사업장